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10 선고 2021가단1052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5. 2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서수정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주) D은 2013. 6. 24. 위 C에게 금 2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9%로 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대출약정서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4. 11. 20. 위 은행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는 이후 위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5가소365682), 2015. 9. 17.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금 6,815,881원 및 그 중 금 1,934,953원에 대하여 2020. 11.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어머니는 소의 E였는데, 위 E는 2018. 8. 8.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E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E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0. 5. 28.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위스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

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독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독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2017. 19. 25. '채권최고액 금 3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G보کم'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사해행위 이후인 2020. 11. 24. '채권최고액 금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뿐만 아니라 가액반환청구도 모두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는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술하였던 2020. 11. 24.까지의 원리금인 금 6,815,881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E는 2018. 8. 8.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B (피고, 수익자)와 자녀들인 I, J, C (채무자)이 있었습니다(갑 제5호 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채무자 C과 피고는 부자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위 E는 2018. 8. 8.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0. 5. 28.'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0. 5.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채무자인 소외 C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3층 아파트

1층 442.24㎡ 2층 내지 23층 397.7㎡, 지하층 403.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3040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9406.2분의 46.9678 끝.

